

2020년도 제7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5. 14.(목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김경숙(분과위원장), 박정인, 최승수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0-70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3.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871건(안건번호 제2020-23751호~25310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23751호~23752호는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이용자가 방송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23753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일본 만화를 판매한 사안임. 게시자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23754호~23790호는 네이버 밴드에서 영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임. 최근 개봉한 영화를 제공하여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일한 복제·전송자가 복수의 영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점, 누구나 게시물을 볼 수 있거나 회원 가입만 하면 게시물을 볼 수 있어 해당 밴드의 폐쇄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25310호는 시스템 오류로 인해 중복하여 심의요청된 것이므로 시정권고를 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793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김경숙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7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70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김경숙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4쪽의 게시자명, 저작물명, 5쪽의 게시물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저작물명, 게시물 내용, 회사명, 저작권자명, 실연자명, 6쪽의 블로그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 게시물 제목, 11쪽의 OSP명, 게시자명, 저작물명, 회사명, 게시물 제목, 게시물 내용, OSP 주소, 댓글 내용, 게시물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12쪽의 OSP 주소, 저작물명, 15쪽의 게시자 ID, 웹하드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제2호 안건인 구글 검색결과 제한심의에 대한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와 제5호에 따라 17쪽~28쪽까지는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해당 안건에 대한 공개여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B 위원: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의 해당 부분은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 A위원: 동의함. 그리고 제2호 안건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회의록은 해당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게 되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C 위원: 제2호 안건 회의록은 해당 쪽수만 표기하면 될 것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게시자명, 저작물명, 게시물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게시물 내용, 회사명, 저작권자명, 실연자명, 블로그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 게시물 제목, OSP명, 게시물 제목, OSP 주소, 댓글 내용, 게시자 ID, 웹하드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비식별 처리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회의 부분인 17쪽~28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와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A, C, B 위원: 제척 사유 해당 없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금일 심의대상은 안건번호 제2020-23751호~25310호로 게시물 수는 모두 2,871개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 보고로 같음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3751호는 익명의 민원인 1명이 신고한 것으로, '○○○○ ○○'에서 ○○○○○○ ○○○○○○ '○○○○' ○○○를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접속해서 보여주면서)영상재생시 유료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조회수는 54,883건임. 1시간 16분 9초 분량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한 화 전체 분량인 것으로 보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3752호는 실명의 민원인 1명이 신고한 것으로, '○○○○ ○○'에서 '○○○○' ○○○ ○ ○○○를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접속해서 보여주면서)해당 게시물 역시 유료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조회수는 34,182건임. 영상재생시 화질이 선명함. 민원인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내용으로 신고하였음. 총 1시간 19분 26초 길
이의 영상인 것으로 보아 해당 안전 역시 한 화 전체 분량을 제공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 2020-23751호, 제2020-23752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B 위원: ‘○○○ ○○’ 이용자가 방송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정당한 권리가 아닌 자가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함.
- A 위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제2020-23751호, 제2020-2375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호 제2020-23753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일본 만화 '○○○○ ○○'을 판매한 사안임. '○○○○ ○○' 1~128화 압축 파일이 150 포인트에 판매되고 있음.

- C 위원: 해당저작물의 판매현황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대상 저작물 판매현황 검색결과를 보여주면서)'○○○○ ○○'은 우리나라 출판사 '○○○○○○'에서 2020. 2. 13.에 30권까지 출간되었음. 인터넷 서점에서 권당 약 4,500원에 판매 중임. 네이버 시리즈에서 대여 및 소장하여 감상할 수 있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0-23753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게시자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음. 가결함이 타당함.

- A 위원: 또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같은 의견임. 시정권고를 가결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제2020-23753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3754호~23790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총 37개 게시물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영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하고 있음.

네이버 밴드와 같이 주로 공통의 관심사나 친목 도모를 위하여 개설되는 SNS는 회원가입이 비교적 자유로우며 회원 사이에 특별한 친목관계가 없는 공개적 또는 개방적 성격의 일반적인 온라인 서비스와 달리 회원들의 친목 도모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폐쇄적 성격이 강하므로 프라이버시나 사적인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

심의대상 게시물의 밴드명인 ‘○○○○○○’, ‘○○○○ ○○ ○○○○’, ‘○○○○○’, ○○○○ ○○ ○○’, ‘○○○○○ ○○○’ 등 만으로는 불법복제물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심의대상 게시물이 존재하는 밴드는 초청장이 있어야 가능한 폐쇄적인 밴드가 아니라 누구나 밴드명을 검색하여 접근이 가능하고 게시물을 볼 수 있어 일반적인 온라인서비스와 다르게 취급할 이유는 없어 보임. 참고로 밴드 ‘○○○○○○’는 과거 시정권고 심의에서 시정권고의 대상이었던 블로그임.

심의위원회는 밴드 내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밴드 개설 목적, 가입의 용이성 내지 폐쇄성, 회원 수의 많고 적음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 여부를 심의하고 있음. 한편 2019. 4. 26. 개최된 전체심의위원회에서 밴드를 통한 불법복제물 확산이 심화되고 있고, 밴드가 저작권을 존중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이에 심의위원회

은 '영화'임. 최근에 개봉한 영화 '▼▼ ▼▼▼' 불법복제물을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수는 2명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접속해서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2020. 4. 17. 등록되었으나 게시물 본문에 "2020. 4. 29. 개봉예정작..아직 미개봉."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해외에서 이미 개봉된 영화가 불법 전송되거나 DVD 제작 과정에서 파일이 유출되어 온라인으로 유통된 것으로 추정됨.

안전번호 제2020-23781호는 영화 '▼▼▼: ▼ ▼▼▼'을 제공한 사안임. 밴드명은 '▼▼▼▼'이며, 회원수는 9명임.

안전번호 제2020-23784호는 영화 '▼▼ ▼: ▼▼▼▼▼▼ ▼▼'를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접속해서 보여주면서)역시 밴드에 가입하지 않아도 게시글을 볼 수 있음. 영화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한 밴드는 아니고, ▼▼▼ 홍보 목적으로 개설한 밴드인 것으로 판단됨. 밴드 회원수는 55명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 제2020-23754호~23790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최근 개봉한 영화를 제공하여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 C 위원: 영화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한 밴드는 아니지만 동일한 복제·전송자가 동일한 밴드 내에서 복수의 영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하고 있음. 보호원 직원이 불법복제물 전송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누구나 게시물을 볼 수 있거나 밴드 가입만 하면 게시물을 볼 수 있다고 판단됨. 심

의대상 게시물은 합법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가결 의견임.

- A 위원: 밴드 내 게시물은 최근 개봉한 영화를 제공하여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은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제2020-23754호~23790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3791호~23812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총 37개 게시물임.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가 어도비(Adobe Systems)사의 'Photoshop', 한글과컴퓨터사의 '한컴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의 'Office', 반디캠컴퍼니(Bandicam Company)사의 'Bandicam' 등의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무설치 자동인증되어 있거나, 키젠 및 크랙을 포함하고 있거나, 일련번호, 제품키, 시리얼 넘버를 함께 제공하고 있음. 어떤 온라인 게시물이 라이선스 인증이 요구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물과 해당 프로그램을 크래킹하는 프로그램 또는 해당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키를 함께 제공한 경우라면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어렵지 않게 인정된다고 할 것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무료 체험용 제공 여부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사가 트라이얼 버전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호원이 조사

한 내용임. Photoshop 프로그램 권리자인 '어도비(Adobe Systems)', 한컴오피스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한글과 컴퓨터', MS OFFICE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Auto CAD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오토데스크(Autodesk)'는 각 홈페이지에서 1개월 무료 체험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Bandicam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반디캠컴퍼니(Bandicam Company)'는 홈페이지에서 무료 체험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다만 심의대상 게시물의 복제물이 정품 프로그램 또는 각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체험용 프로그램과 완전히 동일한 복제물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심의대상 게시물 대부분은 최신 버전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음. 그중 제2020-23795호~23802호, 제2020-23805호, 제2020-23807호는 교육기관용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인지 아니면 라이선스 계약 위반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라이선스 계약 위반인지 아니면 저작권법 위반인지의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동인증, 크랙파일 또는 시리얼 넘버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어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됨. 교육기관용 소프트웨어를 교육기관 외 다른 곳에서 영리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라이선스 계약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자동인증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일련번호, 제품키, 크랙, 시리얼 넘버 등을 함께 제공한 경우라면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A 위원: 예컨대 폰트 프로그램을 비영리 개인이 사용하는 것에는 저

작권 침해의 문제가 없지만, 영리 목적의 개인이나 기업이 이용할 경우는 이용약관 위반임. Bandicam 공식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체험용 프로그램을 비영리 목적의 개인 사용자가 이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디캠 정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함. 체험용 반디캠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면 라이선스 위반임.

- 성원영 전문위원: 라이선스 인증이 요구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크래킹을 하거나 라이선스 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라면 기술적 보호 조치 무력화에 해당함. 이는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한 행위로서 웹하드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리목적이 명백함.
- A 위원: 그렇다면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침해가 명백해 보임. 다만 저작권 침해인지 라이선스 계약 위반인지 등과 관련하여 시정권고의 이유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 2020-23791호~23812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의 측면에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복제·전송자가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이상 심의대상 게시물은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시정권고 심의에서 저작권 보호라는 행적목적 외에 저작권자의 추상적인 의사 내지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함.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안전번호 제2020-23791호~23812호는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가 컴퓨터프로그램 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으로,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에 이의 없음.
- C 위원: 가결 의견에 동의하는 바임.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23813호~25310호는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심의위원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안전 목록 및 증거자료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음악 'HIP'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23841호는 2019. 11. 14. 발매된 음원을 웹하드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한 사안임. 해당 음원을 가수 '마마무(Mamamoo)'의 앨범 'reality in BLACK'의 수록곡임. 100곡 다운로드 가능하며, 함께 제공 중인 다른 음원 정보는 2019. 11. 18. 발매된 가수 '아이유'의 음원 'Love poem'임.
(음악 '친구'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23858호는 2020. 2. 21. 발매된 음원을 웹하드 사이트에서 9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음원은 가수 '방탄소년단'의 앨범 'MAP OF THE SOUL : 7'의 수록곡임. '[Melon]2020년 05월 05일 오전 01시 기준 TOP100' 압축 파일을 제공하고 있으며, 94곡 이용 가능함. 함께 제공 중인 다른 음원 정보는 2020. 5. 4. 발매된 가수 '태연(TAEYEON)'의 음원 'Happy'임.
(음악 '덤더럼(Dumhdurum)'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23908호는 2020. 4. 13. 발매된 음원을 웹하드 사이트서 무료로

제공한 사안임. 해당 음원은 가수 '에이핑크(Apink)'의 앨범 'LOOK'에 수록된 음원으로, 해당 앨범의 수록곡 총 7곡을 이용 가능함.

(게임 '원피스 해적무쌍 4'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20-24109호는 2020. 3. 26. 출시된 게임을 웹하드 사이트에서 1,02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정품 판매가는 약 64,800원임.

(게임 '오리와 도깨비불'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20-24111호는 2020. 3. 11. 출시된 게임을 웹하드 사이트에서 490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정품 판매가는 약 29,900원임.

(영화 '마이 스파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4361호는 2020. 4. 29. 개봉한 영화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29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2020. 5. 13. 기준으로 상영 중이며, mkv 영상 파일에 한글 자막이 포함되어 있음.

(방송 '슬기로운 의사생활'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20-24367호는 tvN에서 2020. 3. 12. 방영 시작한 드라마 프로그램의 1회를 웹하드 사이트에서 171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총 12부작이며, 2020. 5. 13. 기준으로 현재 9회까지 방영되었음.

(방송 '루갈'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4402호는 OCN에서 2020. 3. 27. 방영 시작한 최신 드라마 프로그램의 11회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65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총 16부작이며, 2020. 5. 13. 현재 14회까지 방영되었음.

(영화 '인비저블맨'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4566호는 2020. 2. 26. 개봉한 영화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360 캐시에 판매한 사안임. 참고로 2020. 3. 20.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영화 '온워드: 단 하루의 기적'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20-24596호는 국내 미개봉 영화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270 캐시에 판매한 사안임. 3월 5일 국내 개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개봉 잠정 연기되었음. 제작사는 월트 디즈니 픽처스와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이고, 국내 배급사는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임. mkv 영상 파일에 한글 자막이 포함되어 있음. 참고로 2020년 2월 21일 제70회 베를린 영화제에서 공개되어, 2020년 3월 6일 미국에서 정식 개봉되었는데, 2020년 10주차 북미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함.

(영화 '헌트'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4644호는 2020. 4. 23. 개봉하고 동시에 VOD 서비스를 시작한 영화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290 캐시에 판매한 사안임. mkv 영상 파일에 한글 자막이 포함되어 있음.

(만화 '열혈강호'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5033호는 1994. 12. 27. 출간된 만화를 웹하드에서 2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열혈강호 584화' 압축 파일 다운로드 가능함. 참고로 만화 '열혈강호'는 총 80권까지 출간되어 아직 미완결 상태이며, 정품 단권 판매가는 약 4,500원, e북 단권 판매가는 약 2,520원임.

(만화 '부르짖아요, 아자젤 씨'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5167호는 2010. 7. 15. 출간된 만화를 웹하드에서 10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부르짖아요, 아자젤 씨 01권' 압축 파일 다운로드 가능함. 총 15권 완결된 만화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분류 만화임. 참고로 정품 단권 판매가는 약 4,200원이며, e북 단권 판매가는 약 2,250원임.

(안건 목록표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5310호는 제2020-25309호와 동일한 사안임. 시스템 오류로 인해 중복하여 심의요청된 것으로 파악됨.

- 김경숙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0-23813호~25310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제2020-25310호는 중복하여 심의 요청된 것으로 부결함이 타당함. 나머지 안전들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 음악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A 위원: 동의함. 다만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제2020-23813호~25309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제2020-25310호는 부결하는 것이 타당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23813호~25309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0-25310호는 중복으로 심의 요청된 게시물이므로 시정권고를 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0-25310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0-23751호~25309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선언

- 김경숙 분과위원장이 제76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7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5. 21.

분과위원장 김경숙

위원 박정인

위원 최승수